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3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가합58978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민 담당변호사 안형윤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 론 종 결 2019. 6. 18.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하여)
2019. 8. 27. (피고 D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872,002원과 그중 256,539,662원
에 대한 2018. 11. 29.부터 2019. 4. 2.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
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1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D은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 2018. 9. 13. 접수 제8023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872,002원과 그중 256,539,662원에 대한 2018. 11. 29.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1. 29.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사내이

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사전구상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E기관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17. 12. 1. 중소기업은행에서 3억 원을 변제기 2018. 11.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2018. 10. 2.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1. 2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 원리금 256,539,662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원고는 위 대위변제로 발생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절차 비용으로 1,332,340원을 지출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와 피고 회사, B, C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D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의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각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대위변제한 원금 및 법적절차 비용을 합한 257,872,002원(256,539,662원 + 1,332,340원)과 그중 원금 256,539,66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18. 11.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부분이 위 피고들에게 마지막으로 송달된 2019. 4. 2.까지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정한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2016. 8. 16. 피고 D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7. 8. 15.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 B, C은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2018. 7. 11. 국세 500만 원 체납을 원인으로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되었는데, 피고 C은 2018. 9.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C 소유 부동산으로는 시가 3억 8,750만 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밖에 없었고, 한편 당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2억 5,500만 원의 연대보증채무, 피고 D에 대한 2억 원의 연대보증채무, 신용카드 대출 채무를 비롯하여 여러 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먼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전에 피고 회사의 국세체납 사실이 신용불량 정보로 등록되면서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사전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사전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후구상금 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위 신용보증약정이 성립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 회사는 국세를 체납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등 가까운 장래에 사후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것이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사후구상금 채권 또한 사해

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 만족을 해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피고 C의 재산 상황, 피고 회사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D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에 상당한 자산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 C의 무자력 여부는 피고 회사의 자력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채무에 관하여 주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으로 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주채무자의 일반적인 자력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3. 7. 8. 선고 2003다132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지 않은

이 사건의 경우 피고 D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자산 상황 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피고 D은,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닥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 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50015 판결 등 참조), 피고 C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D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차용하였다거나, 또는 피고 C이 피고 회사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주장,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항변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은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회사, B,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인택
-----	----	-----

	판사	강상효
--	----	-----

	판사	이상언
--	----	-----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시흥시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경기도 시흥시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경사슬래브지붕

20층 아파트

지층 635.576㎡

1층 622.124㎡

2층 603.738㎡

3층 602.492㎡

4층 602.492㎡

5층 602.492㎡

6층 602.492㎡

7층 602.492㎡

8층 602.492㎡

9층 602.492㎡

10층 602.492㎡

11층 602.492㎡

12층 602.492㎡

13층 602.492㎡

14층 602.492㎡

15층 602.492㎡

16층 602.492㎡

17층 602.492㎡

18층 602.492㎡

19층 602.49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6층 호

철근콘크리트벽식구조

133.9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경기도 시흥시

대 22319.2㎡

2. 경기도 시흥시

대 25422.9㎡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 비율 1, 2 47742.1분의 63.28. 끝.